

전국대학교 시설관리자분들을 위한

연금제도 설명회



2018.10.25.(목)

INDEX.

● 1. 급여

- I. 부담금 및 급여산정의 기초
- II. 재직기간 관리
- III. 퇴직급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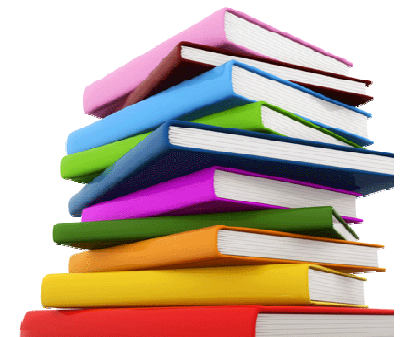
● 2. 재해보상제도

- I. 재해보상급여의 인정기준
- II. 재해보상급여의 종류
- III. 재활급여(신설)
- IV. 직무상유족급여

● 3. 공적연금 연계제도

● 4. 대여(생활자금, 국고)

- I. 생활자금대여
- II. 국고학자금대여



INDEX.

● 1. 급여

I. 부담금 및 급여산정의 기초
(기준소득월액, 부담금)

II. 재직기간 관리
(합산, 소급통산, 임용 전 복무기간 산입)

III. 퇴직 급여
(일시금, 연금 등)



1 급여

I. 부담금 및 급여산정의 기초

“기준소득월액(2010.1.1.부터 적용)” 부담금 및 급여산정의 기초



산정 방식

학교기관에 근로를 제공하고 받은 전년도 과세소득액
(= 근로소득 - 비과세소득 - 방과 후 수업소득)

근무일수

× 30일 × (1 + 당해 연도 공무원보수인상률)

*과세소득액: 연말정산 후 받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16번 항목

- **기준소득월액의 결정 절차 및 적용기간**
 - 당해 년도 7월 ~ 다음 년도 6월(매년 7월 재 산정)
 - 전년도 중에 휴직기간 또는 시간선택제 전환 근무기간이 있는 교직원
⇒ **최근 적용된 기준소득월액 × 공무원보수인상률**
 - **기준소득월액 상한**
 -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1.6배 이내에서
교원은 국공립대학교 총장의, 직원은 일반직 2급 공무원의 기준소득월액 중 최고액을 상한으로 함.
- (예: 2018년 7월 1일 공무원 평균기준소득월액(5,220,000원) × 1.6배 = 8,352,000원)

1 급여

1. 부담금 및 급여산정의 기초

“부담금”

부담금(월 납부금)은 기준소득월액의 일정비율(부담률)을 기준으로 책정
 “5년간 단계적 인상”

(단위: %)			(단위: %)			
직 원	개인부담금	법인부담금	교 원	개인부담금	법인부담금	국가부담금
2016	8.00	8.00	2016	8.000	4.705	3.295
2017	8.25	8.25	2017	8.250	4.852	3.398
2018	8.50	8.50	2018	8.500	5.000	3.500
2019	8.75	8.75	2019	8.750	5.147	3.603
2020	9.00	9.00	2020	9.000	5.294	3.706

총 17%

 재해보상부담금 : 개인부담금 합계액의 **4.54%** (법인 부담)

1 급여

II. 재직기간 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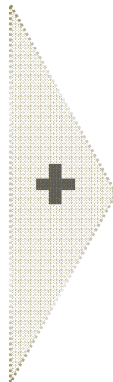
“재직기간의 구분”

기본 재직기간(당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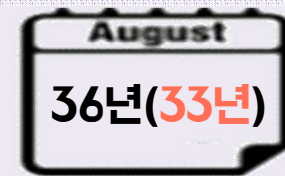
- 임용일부터 퇴직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까지

특례에 의한 가산 재직기간

- 가. 재직기간 합산(사학교직원, 공무원, 군인)
- 나. 재직기간 소급통산(사학연금 시행 이전 근무기간)
- 다. 임용 전 복무기간 산입(=“군소급”)
- ※ 신청기한 : **재직 중** 언제든지



연금법 상
총 재직기간 상한은



※ 부담금 납부기간 단계적 연장
(2016년 법개정)



특례에 의한 재직기간 가산 효과

- (+) 재직기간의 증가로 퇴직급여 상승
- (-) 일반 재직기간 중 급여의 감액 사유(징계, 해임, 파면 등)가 발생할 경우, 가산 기간을 포함하여 급여가 감액됨.

부담금 납부기간

시행 전 재직기간 21년 미만자 단계적 연장



1 급여

II. 재직기간 관리

“가. 재직기간 합산”

현기관 임용 전, **직역연금법의 적용**을 받았던 기간을 총 재직기간에 합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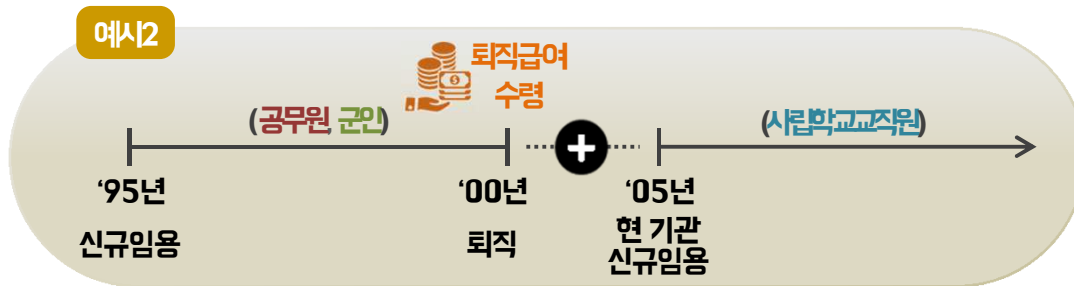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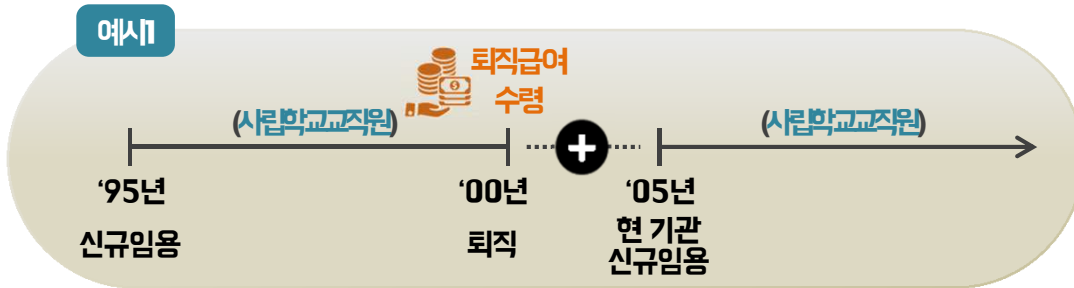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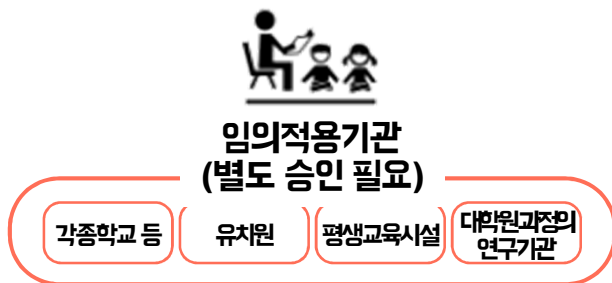
(절차) 교직원 신청 → 승인 → 합산반납금 납부 → 재직기간 가산

1 급여

II. 재직기간 관리

“나. 재직기간 소급통산”

연금법 시행 이전에 사립학교기관에서 근무한 기간을 연금법상 재직기간으로 인정



소급통산 제외대상

- ‘07.07.23. 이후 기간
- ‘07.07.22. 이전 기간으로 국민연금법에 따른 반환일시금을 받지 않은 기간
- ‘88.01.01.~‘07.07.22. 기간으로 국민연금 의무가입기간 중 국민연금법을 적용 받지 않은 기간

(절차) 학교기관 신청 → 승인 → 소급통산 부담금 납부 → 재직기간 가산

1 급여

II. 재직기간 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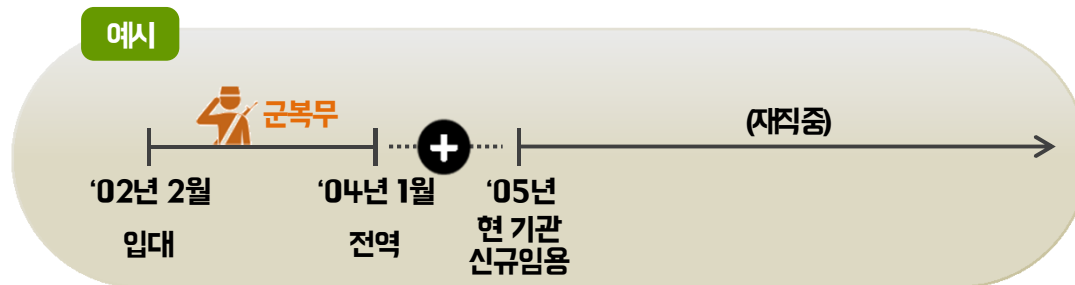
“다. 임용 전 복무기간 산입(군소급)”

임용 전 병역법에 따라 복무한 기간을 연금법상의 재직기간으로 인정



대상

- <병역법>에 따른 현역병 또는 지원하지 않고 임용된 부사관의 복무기간



(절차) 교직원 신청 → 승인 → 군소급 개인부담금 납부 → 재직기간 가산



병역복무기간 중 산입 제외대상

재직 중 입대휴직기간	기본재직기간에 포함		
과거 직역연금 가입 중 기산입한 복무기간	재직기간 합산 대상기간		
실역미필 보충역	특례 보충역	비대상 기간	
무관후보생기간	RNTC 훈련기간	복무기간 중 감축기간	후보생 과정 실역복무기간이아님

1 급여

※ 징계 및 퇴직급여의 제한

파면 및 해임(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횡령 및 유용으로 인한 징계) :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 제한
강등, 정직, 직위해제 : 해당 징계 기간에 대한 퇴직수당 산정 재직기간 1/2 제한



- 수사 중 또는 **형사 재판 계류** 중인 경우
-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징계에 의해 **파면**된 경우

- 퇴직급여 1/2 제한 (5년 미만 재직자 1/4)
- 퇴직수당 1/2 제한



-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 및 유용으로 징계 **해임**된 경우

- 퇴직급여 1/4 제한 (5년 미만 재직자 1/8)
- 퇴직수당 1/4 제한



“퇴직급여 한 푼도 못 받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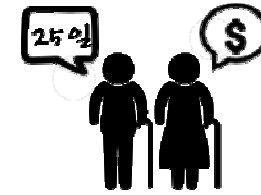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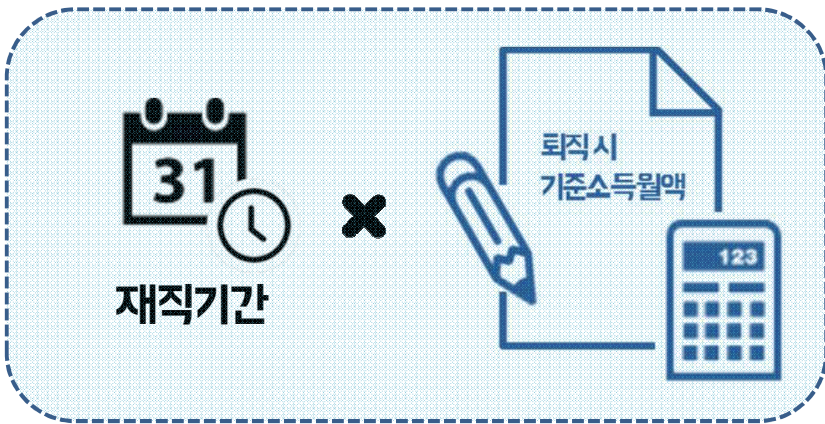
1 급여

III. 퇴직급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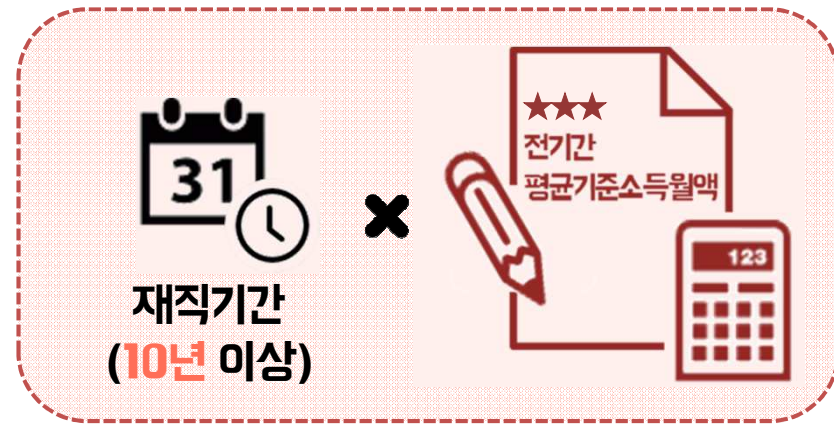
“퇴직급여 산정 기초”



일시금



연금



1 급여

III. 퇴직급여

“퇴직급여의 종류”



퇴직급여 변경 신청

퇴직급여의 변경은 급여 지급일 기준 30일 이내에 가능

가. 퇴직일시금

10년 미만 재직 후 퇴직하여 일시금 수령

나. 퇴직연금일시금

10년 이상 재직 후 퇴직하여 일시금으로 수령

다. 퇴직연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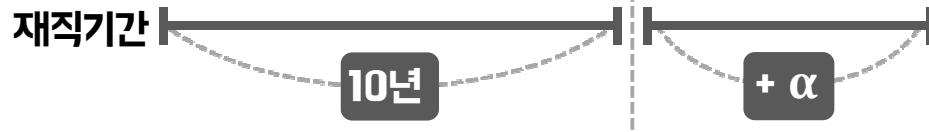
10년 이상 재직 후 퇴직 시, 수급연령에 도달한 때부터 사망 시까지 연금 수령

라. 퇴직연금 공제일시금

10년 이상 재직 후 퇴직 시, 10년 이상을 연금으로 받고 나머지 기간을 일시금으로 수령

마. 조기퇴직연금

수급연령에 미달한 퇴직연금 수급 예정자가 수급 개시일 이전(최고 5년 이전)에 감액된 연금 수령



Check! 퇴직급여의 소멸시효는

(급여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

1 급여

III. 퇴직급여

“퇴직(연금)일시금”

퇴직일시금(교직원이 10년 미만 재직 후 퇴직 시)

퇴직연금일시금(교직원이 10년 이상 재직 후 퇴직 시)

$$\begin{array}{rcc}
 \text{퇴직(연금)일시금} = & \text{종전기간 금액} & + & \text{이후기간 금액} \\
 & \text{(2009. 12. 31. 이전)} & & \text{(2010. 1. 1. 이후)} \\
 & \text{보수월액} & & \text{기준소득월액} \\
 & \text{재직월수} & & \text{재직월수} \\
 & \text{지급률} & & \text{지급률}
 \end{array}$$

- 퇴직(연금)일시금액의 하한 = 개인부담금 + 민법이자(연이율 5%)



P: 현재가치화('10년 이후 퇴직자만 적용)

2009년 말 보수월액을 2010년 이후 퇴직시점의 실제 화폐가치로 보전해주는 것

2009년 말 보수월액 × (P=퇴직 당시 전체공무원 기준소득월액평균액 ÷ 법개정시점의 전체공무원 기준소득월액평균액)

1 급여

III. 퇴직급여

“퇴직연금”

교직원이 10년 이상 재직 후 퇴직 시 연금을 원할 경우

- 퇴직연금 = 2009년 이전 금액 + 2010 ~ 2015년 금액 + 2016년 이후 금액

평균보수월액

재직월수

지급률

평균기준소득월액

재직월수

보정률

지급률

평균기준소득월액

재직월수

보정률

(재분배율)

연도별 지급률

- 2016년 이후 연금액

재직기간 30년 이하 기간 = $f(\text{평균기준소득월액, 재직월수, 보정률, 재분배율, 연도별 지급률})$

재직기간 30년 초과 기간 = $f(\text{평균기준소득월액, 재직월수, 보정률, 연도별 지급률})$



평균기준소득월액이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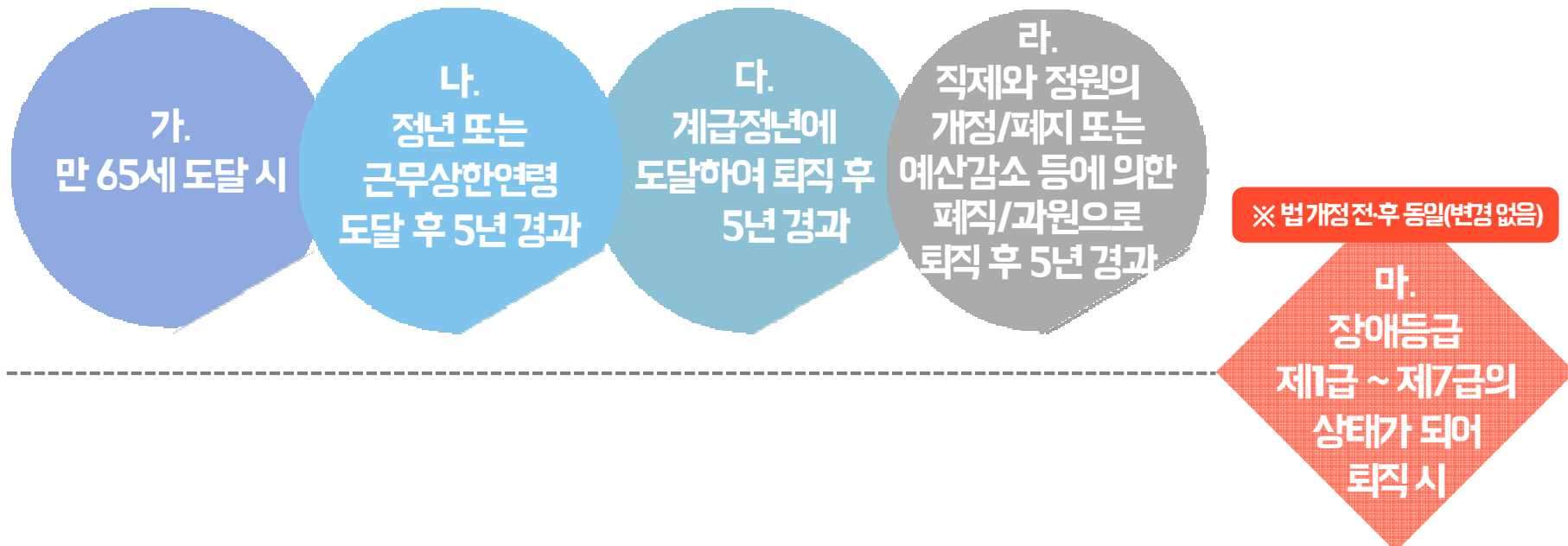
매 월 기준소득월액에 적용기간별 공무원보수인상률을 적용하여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의 현재가치로 환산한 후 합한 금액 ÷ 전체 재직 월

1 급여

III. 퇴직급여

“퇴직연금”

퇴직연금 수급요건 5가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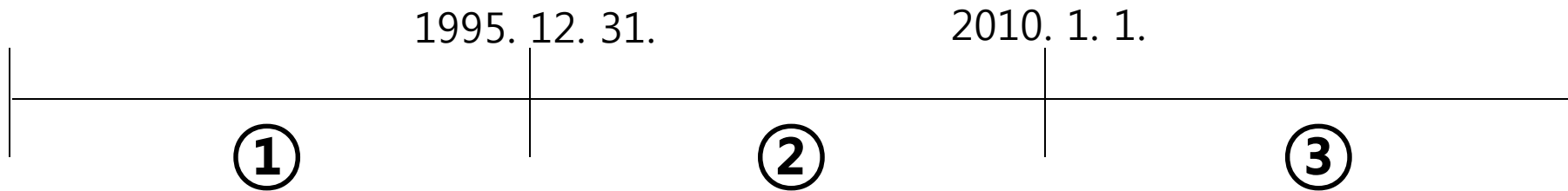
※ 직무상 장애 여부와 상관 없이, 퇴직자가 연금수급 개시연령 대기 중에 장애판정을 받을 경우에도 바로 퇴직연금 수급 가능

1 급여

Ⅲ. 퇴직급여

“퇴직연금”

퇴직연도별 퇴직연금 지급개시 연령 경과조치



① 1995. 12. 31. 이전 임용자

- (2000. 12. 31.) 20년 이상 재직 : 퇴직 후 익월부터 연금지급
- (2000. 12. 31.) 20년 미만 재직 : 다음 두 조건 중 빠른 시기부터 연금지급
 (조건1) 퇴직연도별 지급연령 (2017년~2018년 : 58세, 2019년~2020년 : 59세)
 (조건2) 2000. 12. 31. 현재 20년 미달 재직기간 2배 재직 후 퇴직

② 1996. 1. 1. ~ 2009. 12. 31. 임용자 및 ③ 2010. 1. 1. 이후 임용자

- 퇴직연도 별 해당 개시연령 도달 시

1 급여

III. 퇴직급여

“퇴직연금”

1996년 이후 퇴직연도별 퇴직연금 지급개시 연령 경과조치

1. 앞 페이지 지급요건 내용 ‘가’ 에 대해

퇴직연도	2016~2021 년	2022~2023 년	2024~2026 년	2027~2029년	2030~2032년	2033년부터
지급연령	60세	61세	62세	63세	64세	65세

2. 앞 페이지 지급요건 내용 ‘나/다/라’ 에 대해

퇴직연도	2016~2021 년	2022~2023 년	2024~2026 년	2027~2029년	2030~2032년	2033년부터
지급시기	퇴직사유 발생한 때	퇴직사유 발생한 날부터 1년 경과한 때	퇴직사유 발생한 날부터 2년 경과한 때	퇴직사유 발생한 날부터 3년 경과한 때	퇴직사유 발생한 날부터 4년 경과한 때	퇴직사유 발생한 날부터 5년 경과한 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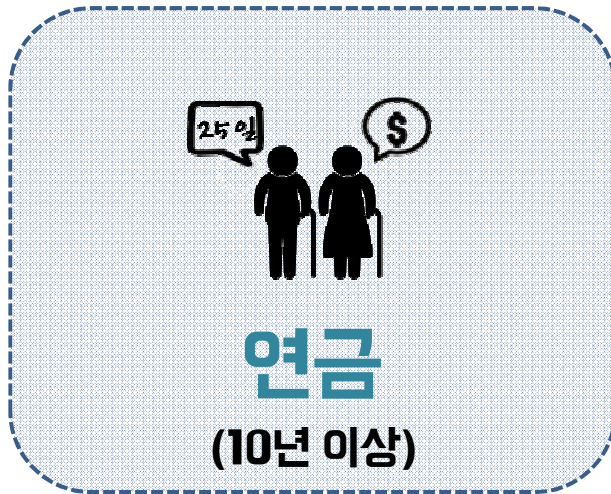
※ 2 보다 1에 따른 연령이 먼저 도달한 때에는 해당연령에 도달한 때 퇴직연금 지급

1 급여

III. 퇴직급여

“퇴직연금공제일시금”

10년 이상 재직 후 퇴직 시,
10년 초과 재직기간 중 일부를 일시금으로 수급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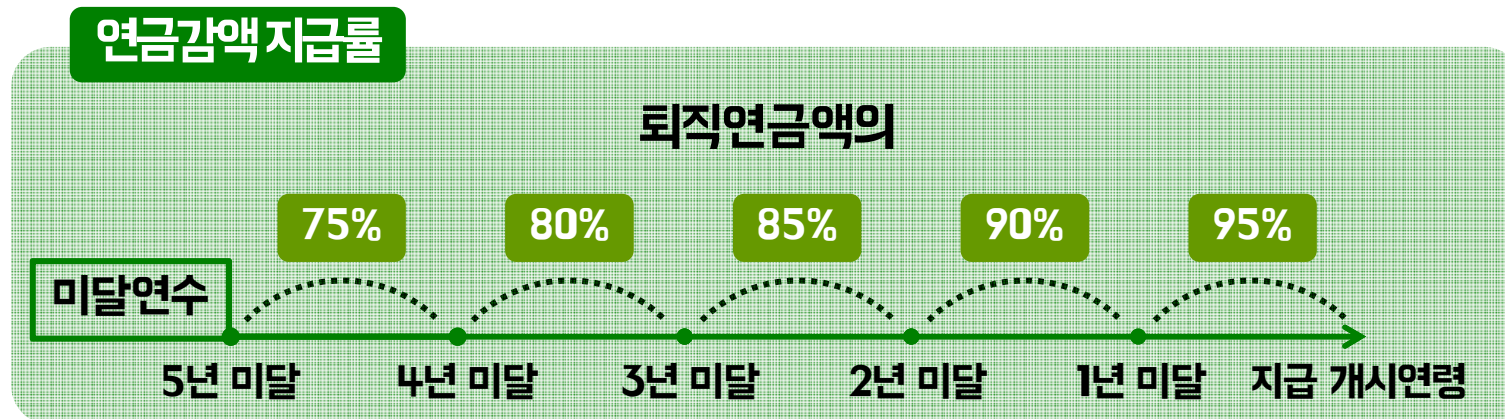


1 급여

Ⅲ. 퇴직급여

“조기퇴직연금”

10년 이상 재직 후 퇴직 하여
지금 개시연령 이전에 연금수급을 원할 경우 (감액된 연금 지급)



조기퇴직연금감액지급률

수급 개시일 기준으로 1년 단위로 5%p씩 감액

※ 개시연령 기준 최장 5년 전까지 조기퇴직연금 수급 가능

1 급여

Ⅲ. 퇴직급여

“분할급여”

(2018년 연금법령 개정 사항, 2018.9.21. 시행)

분할연금

실질적 혼인기간만 인정

- 별거, 가출 등 실질적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기간은 제외

사전청구 가능

- (기존) 이혼/퇴직연금 수급/65세 충족 시 청구 가능
→ 이혼 후 사전청구 가능(퇴직 전/65세 도래 전)

NEW!

분할일시금

분할일시금 제도 도입

- (기존) 교직원이 일시금 수급시 분할청구 불가
→ 일시금도 분할청구 가능

1 급여

Ⅲ. 퇴직급여

“분할일시금”

재직 중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이 교직원과 이혼할 경우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일시금을 1/2 분할 지급

- **지급요건** : ① 이혼(교직원이 퇴직급여청구 전에 이혼한 경우에 한정)
② 교직원이 퇴직급여를 일시금으로 청구하는 경우

- 분할비율 및 혼인기간 산정 기준 : 분할연금 지급 기준과 동일
- 분할일시금 대상 급여 : 퇴직연금일시금, 퇴직일시금, 퇴직연금공제일시금



Check! 분할연금/분할일시금의 소멸시효는
(급여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

1 급여

III. 퇴직급여

“비직무상 장애급여의 종류”

비직무상 장애연금

- ❖ **장애등급 7급 이상**
 - 제1급~제2급 : 기준소득월액의 26%
 - 제3급~제4급 : 기준소득월액의 22.75%
 - 제5급~제7급 : 기준소득월액의 19.5%

비직무상 장애일시금

- ❖ **장애등급 8급 이하**
 - 기준소득월액의 2.25배

재직기간



퇴직급여와 달리 재직기간과 상관없이
장애등급에 따라 연금 또는 일시금 급여 결정



Check! 퇴직연금과 비직무상 장애급여는 병급되지 않으며,
유족연금으로 전환되지 않음.

1 급여

III. 퇴직급여

“퇴직수당”

교직원이 1년 이상 재직 후 퇴직 또는 사망한 때 지급

• 퇴직수당 = 종전기간 퇴직수당 (2009.12.31. 이전) + 이후기간 퇴직수당 (2010.1.1. 이후)

<p>보수월액 재직월수 지급률</p>	+	<p>기준소득월액 재직월수 지급률</p>
------------------------------	---	--------------------------------

기본산식

기준소득월액(보수월액) × 재직월수/12 × 지급률

퇴직수당 지급률	1년~ 5년미만	5년~ 10년미만	10년~ 15년미만	15년~ 20년미만	20년이상
종전 (보수월액)	10%	35%	45%	50%	60%
개정이후 (기준소득월액)	650%	2275%	2925%	3250%	3900%

INDEX.

● 2. 재해보상제도

교직원이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질병, 부상이나 그로 인해 장해상태 또는 사망한 경우에 적절한 보상을 통해 교직원 또는 그 유족의 생활 안정과 복리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사회보장적 성격의 제도

I. 재해보상급여의 인정기준

II. 재해보상급여의 종류

III. 재활급여(신설)

IV. 직무상유족급여



1 급여

I. 재해보상급여의 인정기준

“재해보상급여의 인정기준”

재해보상 급여 인정기준

- **담당 직무수행**으로 인해 발생한 재해
- 체육대회, 수학여행, 졸업식 등 **학교기관의 공식 행사** 중 발생한 재해
- 근무장소 및 그 **부속시설의 하자** 또는 **관리상 부주의**로 발생한 재해
- 출·퇴근 중 **합리적 순로**에서 발생한 재해
- **직무상 질병**이 주된 원인이 되어 **합병증**이 유발된 경우

재해보상 급여 불인정기준

- 직무와 관련 없는 본인의 **기초질환** 또는 **기존질환**
- **체질적** 원인으로 인해 **자연적**으로 유발/악화된 **합병증**
- 사망원인 미상으로 직무와의 **의학적 인과관계** 입증 **이 어려운** 경우
- 학교회계에 의한 **공식 회식이 끝난 후 2차 회식** 중 발생한 사고
- **공식 명령에 의하지 않은** 출타 중 사고를 당한 경우

2 재해보상제도

II. 재해보상급여의 종류

“재해보상급여의 종류”

재해 단기 급여	재해 장기 급여	종류	내용	지급액
		직무상요양비	직무상 질병 또는 부상을 입은 교직원이 공단 승인을 받아 요양을 할 때	
		사망조위금	교직원 본인 및 배우자 또는 부모(배우자 부모 포함), 자녀가 사망한 때	
		재난부조금	교직원의 주택이 화재, 홍수, 호우, 폭설 등 기타 이에 준하는 자연적 또는 인위적 현상으로 인하여 1/30이상 소실, 유실 또는 파괴되었을 때	
		장애연금	직무상 질병, 부상으로 장애상태가 되어 퇴직한 때 또는 퇴직 후 그 질병, 부상으로 장애상태가 된 경우	지급액: 기준소득월액 × 장애등급별지급률 (1~4급: 52%~975%)
		장애일시금	장애연급에 같음하여 일시금 수령: 장애연금의 5년 분	
		직무상유족보상금	직무상 질병, 부상으로 재직 중 사망하거나 퇴직 후 그 질병 부상으로 사망한 때	지급액: 기준소득월액 × 24배상당
		직무상유족연금	교직원이 사망하여 직무상 재해로 승인 받은 후 유족이 유족연금을 원할 경우 ※ 유족연금·유족(연금)일시금과 병급 불가	지급액: 기준소득월액 × 38% 유족가산금 1인당 5%, 최대 20%



1 급여

III. 재활급여(신설)



재활운동비



심리상담비



Check!

제26조(재활운동비) ① 재활운동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가 남을 것이라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공무원이 재활운동을 한 경우에 지급한다.

1. 공무상 요양 중인 공무원
2. 공무상 요양을 마친 공무원으로서 요양을 마친 후 3개월 이내인 공무원

제27조(심리상담비) ① 심리상담비는 공무상 요양 중인 공무원이 공무상 재해로 인한 심리적 치료를 위하여 심리상담을 한 경우 지급한다.

1 급여

IV. 직무상유족급여

“직무상유족연금”

지급률 인상

지급률 38% +
유족 1인당 5% 가산

- 교직원 사망 당시 기준소득월액 기준
- 유족은 최대 4명까지(최대 20%)

기준소득월액 상/하한 설정

보상기준(최고, 최저) 설정

- **최저** :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50%**
- **최고** :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160%**

“직무상유족보상금”

지급률 인상

- 본인 기준소득월액의 23.4배
→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24배

INDEX.

- 3. 공적연금 연계제도

공적연금 연계제도 (목적, 대상, 신청 시 유의사항, 종류 등)



3 공적연금연계제도

연계제도의 목적

“연계제도의 목적”



(과거)
20년 미만 일시금

국민 10년 미만, 직역 20년 미만

연계제도 시행 전

- 각 연금 별 연금수급을 위한 최소 가입기간 미달 시, 연금 수급 불가

※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직역연금 퇴직일시금 수령



(현재)
20년 이상 연계연금

국민 10년 미만 + 직역 10년 이상
국민 10년 이상 + 직역 10년 미만

연계제도 시행 후

- 국민연금과 직역연금 가입기간의 합이 20년 이상이면, 연계연금 수급 가능

※ 가입기간 및 재직기간 만큼
각 연금기관에서 연금 수급



가입기간 합이 20년 이상이지만, 연계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국민연금과 직역연금 모두 각각의 연금 수급을 위한 최소 가입기간(10년+10년)을 충족 했을 경우,
연계 신청 불가 ⇒ 해당 기관에서 각각 연금 수급

3 공적연금연계제도

공적연금연계제도 한눈에 보기

“공적연금연계제도 한눈에 보기”



대상
 법 시행일(2009.08.07) 이후
 연금 간 이동자

<특례>
 2007.07.23. 이후 '국민→지역' 이동자
 2009.02.06. 이후 '지역→국민' 이동자



신청시기

'국민→지역' 이동자:
 지역연금 가입자가 될 때부터

'지역→국민' 이동자:
 국민연금 가입자격 취득 후 신청
 ※ 퇴직일시금 미수령자는 퇴직 후 5년 이내



수급시기
 65세부터 수급하지만, 경과규정에
 따라 수급연령 특례 적용

출생연도	~'52	'53~'56	'57~'60
수급연령	60세	61세	62세
출생연도	'61~'64	'65~'68	'69~
수급연령	63세	64세	65세



신청기관
 가입이력이 있는
 연금기관 중 어디서나

3 공적연금연계제도

연계제도 신청 시 유의사항

“연계제도 신청 시 유의사항”

의무가 아닌 본인

선택

연금수급개시연령이

연기

될 수 있음

희망하지 않으면 각각의

**일시금
지급**

(국민연금은 60세 이후)

연계신청 시 미납채무(부담금, 대여금 등)

**전액
상환**

필수



〈연계급여의 지급개시연령〉

직역연금법, 국민연금법 중 가장 늦은 시점의 수급연령을 기준으로 연계연금 지급 (통상 국민연금 수급연령 기준)

예) '62년생 A는 직역 20년 가입 → 2017년 퇴직 → 국민 5년 가입

⇒ 직역연금법 상 A의 연금수급개시연령은 60세이지만, 연계제도를 신청하면 연계법에 따라 63세에 연금수급개시

연계신청을 한 후에는 직역연금에 재임용으로 합산한 경우가 아니면 취소할 수 없으므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함 (즉, 연계제도와 직역연금의 합산제도와 상충하는 경우에만 취소 허용)

INDEX.

● 4. 교직원 복지

I. 생활자금대여 (대상, 한도, 상환 등)

II. 국고학자금대여 (대상, 한도, 상환 등)



4 교직원 복지

I. 생활자금대여

“생활자금대여”



대상

- **교직원:** 1년 이상 재직 및 퇴직급여 예상액의 1/2이 100만원 이상인 자
- **연금수급자**



보증보험설정대여

대상: 퇴직급여 예상액이 2000만원 미만인 교직원이 퇴직급여 예상액의 1/2 이상 대여받고자 할 경우
한도액 1,000만원

※ 일반 생활자금 대여 한도액 + (1,000만원 - 일반 생활자금 대여 한도액)



한도액

- **교직원:** 퇴직급여 예상액의 1/2 범위 내에서 6,000만원
 - **연금수급자:** 1,000만원
- ※ **대여이율:** 기준금리 + 1.0%p ± α
(α: 유사기관 대여이율과 비교·조정)

2018년 4분기 기준 연 3.6%



제출 서류

- **교직원:** 신청서(제301호 서식), 예금통장사본, 주민등록증사본(내빙신청자에 한함), 보증보험증권(보증보험설정대여대상자만 해당)
- **연금수급자:** 신청서(제306호 서식),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유족의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유족이 배우자가 아닐 경우)

※ 연금수급자 중 만 70세 이상인 자, 유족연금 수급자, 연금법상 유족이 없는 자는 **보증보험증권 추가 제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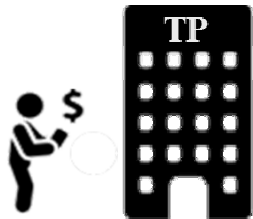
4 교직원 복지

I. 생활자금대여

“생활자금대여 상환”

상환방식

- **교직원**: 원리금균등상환 또는 거치 후 원리금균등상환
- **연금수급자**: 원리금균등상환



상환기간

- **교직원**: 최장 13년
 - **연금수급자**: 최장 5년
- ※ 금액별 상환기간 상이

대여 금액별 상환기간

	대여금액별	상환기간	
		원리금균등상환	거치후원리금균등상환
재직자	100만원 이상 ~ 500만원 미만	3년 이내	1년 거치 2년 상환
	500만원 이상 ~ 1,000만원 미만	5년 이내	2년 거치 3년 상환
	1,000만원 이상 ~ 2,000만원 미만	7년 이내	2년 거치 5년 상환
	2,000만원 이상 ~ 5,000만원 미만	10년 이내	3년 거치 7년 상환
	5,000만원 이상 ~ 6,000만원 이하	13년 이내	3년 거치 10년 상환
연금수급자	100만원 이상 ~ 500만원 미만	3년 이내	해당 없음
	500만원 이상 ~ 1,000만원 이하	5년 이내	

4 교직원 복지

II. 국고학자금대여

“국고학자금대여”



대상

학사과정

- 교직원(본인)
- 교직원 자녀(재혼자녀 포함)



상환기간

- 4년제 이상 대학 졸업: 졸업 후 2년 거치 4년 분할상환
- 전문대학 졸업: 졸업 후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 ※ 중퇴·자퇴자(3학기 이하) : 중퇴 익월부터 2년 거치 2년 분할상환



한도액

- 국내대학: 실등록금
- 해외대학: 연간 미화 \$10,000 이내
- ※ 국고대여로 무이자
- ※ 기숙사비, 교통비, 실습비 등 제외



제출 서류

- 국고학자금대여신청서(제302호 서식)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 등록금납입고지서
- ※ 외국대학인 경우: 입학허가서
- ※ 학점은행제인 경우: 교육비납입증명서



감사합니다.